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66
----------	-----

2019. 4. 22.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제안경위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 3. 29. 권영희 의원 대표 발의
- 회부일자 : 2019. 4. 3.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4.22. 상정·의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권영희 의원)

### 1. 제안이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 또한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로 개정할 바 있음.
- 이에 따라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어 관련 표현을 수정하며 오탈자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장애” 표현을 수정함(안 제18조의2제1호)

### Ⅲ. 검토보고의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해당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2019년 3월 29일 권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건축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해촉 사유의 하나인 ‘심신장애’를, ‘장애’라는 용어에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편견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심신쇠약’이라는 보다 설명적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 발의 배경을 보면, 서울시 인권위원회(‘18년 4차 정기회, ’18.10.31.)에서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을 권고하고<sup>1)</sup>, 이 조례를 포함하여 주거 기본 조례, 역사도시 기본 조례,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6개 조례 및 규칙에(붙임1) 해당 권고 이행을 요청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등을 통해 어렵게만 생각되어 왔던 법규를 수요자에게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정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은 수요자 인식을 감안하여 조례 제·개정시 조문 작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킨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장애'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시 일부 조례의 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개정에 대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위회”를 “의뢰”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제4호 중 “심의 예”를 “심의에”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u>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p> <p>2. ~ 3.(생략)</p>	<p>제18조의2(위원의 해촉) ----- ----- -----.</p> <p>1. <u>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u> ----- -----</p> <p>2. ~ 3.(현행과 같음)</p>
<p>제2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위 <u>회</u>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현행 과 같음)</p> <p>② ----- <u>의</u> <u>뢰</u>----- -----.</p>
<p>제22조의2(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3.(생략)</p> <p>4.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으 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u>심</u> <u>의</u>에 관한 사항</p>	<p>제22조의2(건축정책의 시의회 보고)</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3.(현행과 같음)</p> <p>4. ----- ----- <u>심</u> <u>의</u>에 -----</p>